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8.06.28., 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9.05.22., 2022.03.04.>
- ② 간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직원 및 법률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05.22., 2022.03.04.>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에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부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등)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다.

1. 개인정보보호 규정·지침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2.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3. <삭제 2019.05.22.>
4. 개인정보 유출 시 소송 및 분쟁 조정, 기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5. 개인정보 유출 통제 및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6. <삭제 2019.05.22.>
7. <삭제 2019.05.22.>
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9. <삭제 2019.05.22.>
10. <삭제 2019.05.22.>
11. <삭제 2019.05.22.>
12. 개인정보보호 규정 이행 상태 및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05.22.>
1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05.22.>

제8조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공개할 시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심의 또는 기타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